

2025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697
------------	------

2025. 06. 18.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641,434	3,754,611	△ 113,177	△ 3.0
경상적세외수입	1,249,957	1,192,828	57,129	4.8
임시적세외수입	173,607	66,349	107,258	161.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092	18,092	-	-
지난연도수입	8,853	8,853	-	-
국고보조금등	1,064,653	1,066,581	△ 1,928	△ 0.2
국내차입금	433,000	433,000	-	-
보전수입등	33,347	256,583	△ 223,236	△ 87.0
내부거래	659,925	712,325	△ 52,400	△ 7.4
일반회계	632,189	642,849	△ 10,660	△ 1.7
경상적세외수입	46,101	57,329	△ 11,228	△ 19.6
임시적세외수입	8,206	7,639	567	7.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7	257	-	-
국고보조금등	576,951	576,951	-	-
보전수입등	674	674	-	-
주택사업특별회계	2,987,970	3,100,276	△ 112,306	△ 3.6
경상적세외수입	1,203,743	1,135,386	68,356	6.0
임시적세외수입	165,401	58,710	106,691	181.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93	8,293	-	-

지난연도수입	7,424	7,424	-	-
국고보조금등	487,702	489,630	△1,928	△0.4
국내차입금	433,000	433,000	-	-
보전수입등	22,884	255,909	△233,025	△91.1
내부거래	659,523	711,923	△52,400	△7.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1,275	11,486	9,789	85.2
경상적세외수입	113	113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542	9,542	-	-
지난연도수입	1,429	1,429	-	-
보전수입등	9,789	-	9,789	순증
내부거래	402	402	-	-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256,834	4,359,333	△102,499	△2.4
행정운영경비	1,085	1,085	-	-
재무활동	1,447,971	1,530,996	△83,024	△5.4
사 업 비	2,805,021	2,824,441	△19,420	△0.7
예 비 비	2,757	2,811	△55	△1.9
일반회계	1,257,813	1,257,795	18	0.0
행정운영경비	1,085	1,085	-	-
재무활동	384,743	384,743	-	-
사 업 비	871,984	871,966	18	0.0
주택사업특별회계	2,981,525	3,093,832	△112,306	△3.6
재무활동	1,046,039	1,138,853	△92,813	△8.1
사 업 비	1,932,768	1,952,207	△19,438	△1.0
예 비 비	2,717	2,772	△55	△2.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7,496	7,707	9,789	127.0
재무활동	17,189	7,400	9,789	132.3
사 업 비	268	268	-	-
예 비 비	39	39	-	-

Ⅱ.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가.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입과목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10,638	
(주택정책과)	배당금수입	▶SH 배당수입 '24년 결산에 따른 확정	45,775	57,000	△11,228	△19.7
(임대주택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공동체주택활성화 사업 이차보전 반납액	553	-	553	순증
(임대주택과)	위탁반환수입	▶공동체주택활성화 사업 지원허브 사업비 반납액	37	3	34	1133.3
주택사업특별회계					△112,306	
(주거정비과) *임대주택과	공유재산임대료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보증금 둔촌주공임주, 재개발임대료인상률 반영	915,794	848,294	67,500	8.0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기타이자수입	▶장기안심주택 사업 '24년 정산에 따른 예금이자	860	4	856	21,400.0
(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과	자치단체간부담금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도봉소방학교 자치구 부담금	480	-	480	순증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사회주택공급 사업 이차보전 반납액	38	-	38	순증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공공주택과	위탁반환수입 (국민계정)	▶장기안심주택 사업 - '24년 정산에 따른 사업비 반납액 - '25년도 보증금 반환액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비반납 미집행 예상되는 5개소 반납	95,635	463	95,172	20,555.5
(주거정비과) *임대주택과	위탁반환수입 (도정계정)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 '24년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	11,000	-	11,000	순증
(주거정비과) *임대주택과	국고보조금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사업 세입과목정정(국고보조금→기금)	10,227	11,480	△1,253	△10.9
(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과	기금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지별 세출 증/감에따른 국비반영	476,218	476,893	△675	△0.1
(주택정책과)	순세계잉여금 (국민계정)	'24년 결산 결과 반영	40,315	102,148	△61,833	△60.5
(주거정비과)	순세계잉여금 (도정계정)	'24년 결산 결과 반영	-39,833	136,200	△176,033	△129.2
(재정비 촉진과)	순세계잉여금 (재촉계정)	'24년 결산 결과 반영	3,770	-	3,770	순증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24년 집행잔액 국비(30%)잔액	1,071	-	1,071	순증
(주택정책과)	예수금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4년 결산에 따라 조정	187,600	240,000	△52,400	△21.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789	
(공동주택과)	순세계잉여금	▶'24년 결산 결과 반영	9,789	-	9,789	순증

나.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18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운영	▶ 특정업무경비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대민활동비	406	388	18	4.6
주택사업특별회계					△112,306	
임대주택과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출자금 / SH선부담액 정산으로, 불금하여 차년도에 재편성하여 집행	(X54,873) 87,558	(X54,873) 104,634	(X0) △17,076	△16.3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 공기관경상위탁, 공기관자본위탁 연내 미집행 예상금액 조정	169,344	177,144	△7,800	△4.4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국고보조금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세입과목 정정 (국고보조금→기금)	(X9,544) 9,544	(X10,797) 10,797	(X△1,253) △1,253	△11.6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국고보조금반환금 금액 단순 오기재 정정	39,914	40,473	△559	△1.4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건설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연내 미집행 예상금액 조정(2개소)	(X0) 830	(X950) 1,780	(X△950) △950	△53.4
	공공주택건설 (통합공공임대)	▶ 공기관자본위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사업지별 추진상황에 따라 증감(4개소)	(X43,247) 47,227	(X42,972) 46,472	(X275) 755	1.6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 공공운영비 화재보험 타사업과 일괄가입, 예산절감	3	5	△1	△40
주거환경 개선과	국고보조금 반환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정산반납	145	-	145	순증
공동주택과	국고보조금 반환	'23년 재건축초과이익의 보조금 정산 반납	2	-	2	순증
주거정비과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개정법시행, 기준완화로 수요증가 반영	5,502	1,983	3,519	177.5
	공공정비계획 수립	▶ 자치단체경상보조 신속통합기획 활성화로 수요증가 반영	8,988	5,619	3,369	60.0
주택정책과	예비비(국민)	'24년 결산에 따른 예산 정리 감액	930	948	△18	△1.9
주거정비과	예비비(도정)	'24년 결산에 따른 예산 정리 감액	897	905	△7	△0.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24년 결산 후 여유자금 감소로 감액	320,100	416,300	△96,200	△23.1
재정비 축진과	예비비(재촉)	'24년 결산에 따른 예산 정리 감액	890	920	△30	△3.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재촉)	'24년 결산 후 여유자금 예탁	231,100	227,300	3,800	1.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789	
공동주택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4년 결산 후 여유자금 예탁	17,189	7,400	9,789	132.3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은정)

1) 총괄

- 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 1,131억 7천8백만원(3.0%) 감액된 3조 6,414억 3천3백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24억 9천9백만원(2.4%) 감액된 4조 2,568억 3천 4백만원임.
-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106억 6천만원 (1.7%), 감액하고, 세출은 그보다 적은 1천8백만원(0.0%) 증액하였음.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1,123억 6백만원(3.6%) 감액하고, 세출도 △1,123억 6백만원(3.6%) 감액하였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세입 97억 8천9백만원(85.2%)을 증액하고, 세출도 97억 8천9백만원(127.0%)을 증액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¹⁾	증감	증감률
세입	계	3,641,433	3,754,611	△ 113,178	△ 3.0
	일반회계	632,189	642,849	△ 10,660	△ 1.7
	주택사업 특별회계	2,987,970	3,100,276	△ 112,306	△ 3.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1,275	11,486	9,789	85.2
세출	계	4,256,834	4,359,333	△ 102,499	△ 2.4
	일반회계	1,257,813	1,257,795	18	0.0
	주택사업 특별회계	2,981,525	3,093,832	△ 112,306	△ 3.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7,496	7,707	9,789	127.0

1) '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간주처리 예산 포함한 예산임

2) 세입예산안

가. 일반회계 (예산서 29~31p)

- 금회 일반회계 세입 △106억 6천만원 감액은 주로 배당금수입(△112억 2천8백만원)에 의한 것이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5억 5천3백만원)과 위탁비반환수입과목(3천4백만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임.
- “배당금수입”(예산서 29p)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의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금²⁾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21년~’24년 세입평균액인 570억³⁾으로 세입 추계하였으나, SH공사 이사회(‘25.3.26.)에서 ’24년 결산 및 행안부 권고(당기순이익 30%이하 배당)⁴⁾⁵⁾를 반영한 457억 7천2백만원으로 확정⁶⁾되어 그 차액인 112억

2)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SH공사 회계규정」 제163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
- ②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 ③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④ 시 일반회계 납입(배당)
- ⑤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3) SH공사 배당금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서울시 배당액	비고
1997년	144,812	※배당금은 매년 발생하지는 않으며, 해당 회계연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서울시로부터 배당요구액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
1998년	3,000	
1999년	10,000	
2000년	7,000	
2001년	10,659	※지급절차 : 결산결과 보고 및 서울시 배당요구 협의 → 이사회 의결 → 서울시 결산 승인(배당고지서 발급 및 지급)(결산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02년	1,500	
2003년	1,168	
2004년	949	
2020년	50,000	서울시 결산 승인일(2021. 5. 12.) → 지급일: 2021. 6. 11.
2021년	60,000	서울시 결산 승인일(2022. 5. 12.) → 지급일: 2022. 6. 13.
2022년	70,000	서울시 결산 승인일(2023. 5. 8.) → 지급일: 2023. 6. 8.
2023년	48,000	서울시 결산 승인일(2024. 5. 17.) → 지급일: 2024. 6. 4.
2024년	45,772	서울시 결산 (6월 중 예정)
합 계	452,860	

4)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에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의 30%

2천8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⁷⁾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 반환수입”(예산서 31p)은 공동체주택 활성화 사업⁸⁾의 지속성이 불투명하여 신규 공급 중단 등 재구조화를 추진 중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이차보전사업⁹⁾(5억5천3백만원), 지원허브 사업¹⁰⁾(3천4백만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정산 반납받기 위함임.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서 59~61p)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123억 6백만원 감액 되었음. 주된 감액 과목은 순세계잉여금(△2,340억 9천6백만원), 예수금수입(△524억원)으로 '24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임. 주된 증액과목은 위탁비반환수입(1,091억 1천1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675억)임.
- 가장 큰 감액사항은 순세계잉여금(예산서 60p)으로, 기정예산 대비 98.2%를 감액하였음. '25년 본예산 편성 시 세입재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24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세입예산에 미리 반영한 것이나, 금번 결산 결과 추계치와 결산결과의 차이가 상당하고, 도정제정의 경우 결손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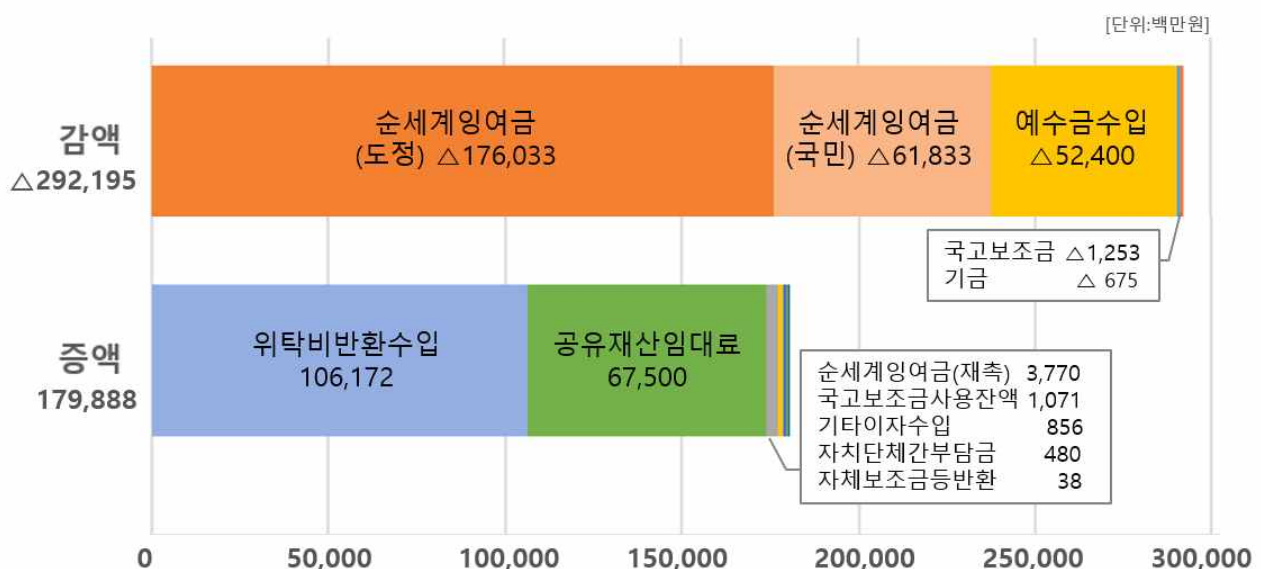
를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음.

- 5) 부채중점관리기관제도는 2014년도 도입되었으며,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함. SH공사의 2014년도 부채규모는 17조 1,90억원, 부채비율은 273%로 도입이후 지금까지 계속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해당함.
- 6) '24 사업연도 이익금 152,575백만원 중 45,772백만원(30%)를 시에 배당하기로 함
- 7) SH공사 배당금액은 회계연도 결산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금액이 매 해 유동적이며, 세입으로 추계하는 것과 상이할 수 있음. 이에 향후 세입추계시 보다 정확한 세입반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8) 공동체주택활성화사업은 고립, 주거불안, 육아 등의 문제를 입주자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14년부터 추진되었음. 10년간 39개소(407호) 공급하였으나, 유사사업인 사회주택 대비 공급실적이 부진하고 공동체 공간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 등 문제점이 지속되어 옴.
- 9) 이차보전사업은 사업자의 건설자금 대출의 이자 연2%를 준공후 8년까지 지원하는 사항으로 은행에서 반기별로 청구하면 시가 은행에 사전 이체하고, 이를 은행에서 매달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시에서 은행에 이체한 금액과 은행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를 반납받는 것임. 반납정산 대상 기간은 '20~'24년임.
- 10) 지원허브 사업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사업자인증제도 교육, 입주자 간담회 지원,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홍보채널 운영(블로그,뉴스레터,기자단,누리집), 사업개선편안 연구 등을 추진하였음.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 대행 운영함.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2,987,970	3,100,276	△112,306	△3.6%
세외수입	1,384,861	1,209,814	175,047	14.5%
경상적세외수입	1,203,743	1,135,386	68,356	6.0%
中 [공유재산임대료]	(1,134,792)	(1,067,292)	(67,500)	(6.3%)
임시적세외수입	119,189	12,498	106,691	853.7%
中 [위탁비반환수입]	(109,111)	(2,938)	(106,172)	(3,613.4%)
기타수입 등	61,930	61,930	-	-
보조금	487,702	489,630	△1,928	△0.4%
지방채	433,000	433,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82,407	967,832	△285,425	△29.5%
보전수입등	22,884	255,909	△233,025	△91.1%
中 [순세계잉여금]	(4,252)	(238,348)	(△234,096)	(△98.2%)
┌ 국민계정	40,315	102,148	△61,833	△60.5%
├ 도정계정	△39,833	136,200	△176,033	△129.2%
└ 재촉계정	3,770	0	3,770	순증
내부거래	659,523	711,923	△52,400	△7.4%
中 [예수금수입]	(187,600)	(240,000)	(△52,400)	(△21.8%)

- 이에 금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됨에 따라 금년도 내 불급한 사항에 대하여 세입확대(SH공사 위탁비반환)하고 세출감축(SH공사 매입임대주택 정산을 위한 출자금)하는 사항이 확인됨. 이러한 조치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 차년도 예산편성 및 실제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증/감 비중 비교>

- “공유재산임대료”는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보증금’에 관한 것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임대아파트 신규 입주 임대료(580억원)¹¹⁾¹²⁾¹³⁾와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결정(95억원)¹⁴⁾으로 인하여 총 675억원을 증액하였음.
- “기타이자수입”은 ‘24년 장기안심주택¹⁵⁾ 사업을 대행한 SH공사로부터 ’24년도 정산¹⁶⁾에 따라 위탁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8억 5천6백만원을 반납받고자 함임
-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필요시설(가족센터)에 대한 ’24년도 도봉구 부담금(4억 8천만원)을 세입처리한 사항으로, 다시 세출예산으로 SH공사로 교부할 예정임.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사회주택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19년~’24년 기간 중 대출을 전액상환한 사업장(7개소)에 대하여 정산하고 은행으로부터 잔액을 반환받기 위한 것으로, 3천8백만원 편성하였음.¹⁷⁾

11) 둔촌주공재건축 사업지의 임대아파트는 총 1,046세대로 미리내집 300세대와 장기전세주택 746세대로 구성됨. 주변 전세 시세의 75% 금액을 산정하여 예상 수입액을 3,269억6천2백만원으로 산정하고, ’24년도 수입금액(126억9천만원)과 ’25년도 본예산 편성금액(2,562억3천9백만원)을 제외한 580억3천3백만원을 둔촌주공 임대료 세입으로 편성함.

12) 둔촌주공 임대료수입과 관련하여, ’24년도 5월 세입 추경에 859억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제 세입은 126억9천만원으로(수납률14.8%) ’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도정계정) 결손의 큰 부분을 차지함.

13) ’24년도 6월 말 조합에서는 입주기간을 2024년11월27일~2025년3월31일(4개월)로 결정 함. 10월 말 경 기반시설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며 입주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입주를 시작함.

14) 재개발임대주택 중 기존공급분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5%) 및 조정지수(납부유예제도,50%)로 산정하여 ’25 본예산 편성하였으나, 임대료 인상률이 3.9%로 확정되고, 납부유예율이 낮아 조정지수를 적용하지 않음(증,감액요인동시적용). 이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재계산하고, 당초예산과의 차액(95억8천5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함.

15)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증금 4.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월세보증금의 30%금액(최대6천만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사업임. 일정요건(소득,부동산,자동차)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며, 2년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

16) 다음페이지 위탁비반환수입 중 장기안심주택 ’24년도 정산 요약표 참조, (이자 ④에 해당)

17) 추경요구 이후 정산상 누락분(31,897천원)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납부완료(70,339천원)

○ “위탁비반환수입(주택정책과)”

- ▶(‘24년도 장기안심주택 정산 관련) ‘24년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대행한 SH로부터 ‘24년도 정산¹⁸⁾을 통해 위탁한 사업비를 반납받고자 함임. 반납 사업비는 ‘24년도 수입 및 지출 간 차액 중 ‘25년도 집행대비 보유분과 예금이자¹⁹⁾를 제외한 나머지로 53억2천1백만원임.

< ‘24년도 서울시 대행사업비 정산보고 자료 요약>

구 분		내 용	금액(억원)	비 고
‘24년 정산	수입 (A)	대행사업비(‘24년도 지급예산)	493	
		보증금 반환금	421	
		이월금	508	
		예금이자(D)	8	
		기타(보증보험료환급(‘23년도분))	0.1	
	지출 (B)	보증금 지원금	1,027	
기타 운영비 ¹⁹⁾		24		
대행사업수수료(‘23년도,미지급)		7		
잔액 (C)			372	A-B
반납금 산정	‘25년도 집행대비 보유분(E)	대행사업수수료(‘24년도,1%)	10	
		집행대비보유분(3개월분)	300	
	서울시 반납	예금이자(D)	8	
		사업비원금(G)	53	C-E-D

- ▶(‘25년도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반환금 관련) ‘25년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반환금은 최근 기존의 정산방식(차년도 정산시 반납)과 달리 당해연도의 반환금을 반납받는 것임.

- 반환금 세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5개년 평균 반환비²⁰⁾에 여유를 더하여 493억5천1백만원을 추계하고 세입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18) 2024년도 서울시 대행사업비 정산 보고(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공급부-1036) 비공개자료.

19)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계약대행수수료,부대비(홍보물,인쇄비), 지상층이사비 등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0)	433	576	미반환	361	422

이는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22년도 보증금반환금이 미반환되어 그 수치가 없는 점, '22년도를 제외한 4개년으로 나누어 평균을 산정한 점²¹⁾, 또한 평균에 더해진 40억원의 여유분이 어떤 수치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임.

- 또한, 당해연도 보증금을 반환받음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4년도 정산 방식에 따르면 전년도 보증금 반환금을 차년도 1~3개월 집행대비 보유분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이를 당해연도에 세입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에따라 차년도 사업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6년도 본예산 편성 및 SH에 교부함에 있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금번 '25년도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를 당초 3회(4월, 8월, 12월)에서 2회(4월, 11월)로 횟수를 줄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이사시기등이 중요한 본 사업 특성상 실질적으로 정책수혜자가 줄어들 수 있는 조치로 사료됨
- '25년도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반환금 세입 편성이 금번 추경의 주요사인 순세계잉여금 부족을 해소하고자 무리하게 세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편일 경우, 이는 주거약자인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약자와의 동행인 시정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것임.

▶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 SH에서 대행으로 조성하고 있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지 중 5개소의

21) '22년도 데이터가 없으나, 이것이 전,후연도에 반영된 것으로 감안하여 5개년도로 평균할 경우에는 그 값이 358억원으로 현재 산정한 평균 448억과 9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오차가 약 25%임.

위탁사업비 중 금년 내 집행이 불급한 사항에 대해 반납받는 사항으로. 신내4(60억), 연희(200억), 증산(80억), 구의유수지(50억), 장지차고지(15억)으로 총 405억원임. 이 중 신내4, 연희, 장지차고지는 금년 내 착공 예정으로, '2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예산편성이 필수인 사항임.

○ “위탁비반환수입(주거정비과)”

-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 관련 '24년도 집행잔액을 반납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액(24억 7천만원)을 감안하여 110억원 증추경하였음(총134억 7천만원). 다만, 추경 예산요구 이후 '24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143억 6천7백만으로 확정되어 약 8억 9천7백만원이 초과로 수납될 예정임.

- “국고보조금”은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사업과 관련하여 세입과목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12억 5천3백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²²⁾임.

- “기금”은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지별 추진현황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조정²³⁾함에 따라 기금 세입을 6억 7천5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주택건설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연내 미집행 예상금액 조정(2개소)	(X0) 830	(X950) 1,780	(X△950) △950	△53.4%
공공주택건설 (통합공공임대)	▶공기관자본위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사업지별 추진상황에 따라 증감(4개소)	(X43,247) 47,227	(X42,972) 46,472	(X275) 755	1.6%
계				(X△675) △195	

22) 세출예산도 같은 이유로 전액 감액 예정. 제2차간주처리 때에 ‘기금’으로 세입 및 세출 기편성하였으며 금액은 95억4천4백만원으로 상향.(임대주택과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국고보조금’사업)

23) 세출추경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 16p(공공주택건설). 19p(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참조.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24년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6년도 본예산에 세출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 학교용지특별회계 (예산서 75p)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는 `24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97억 8천9백만원)을 세입처리하고, 전액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3) 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073p, 예산서 311p)

- 일반회계 세출은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사업 중 주택실조직개편 및 임기제 채용 등에 따른 직원 대민활동비가 증가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1천8백만원 증액하는 것임.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특정업무경비	C주택실 특정업무경비 50,000원*30명*12월	= 18,000천원
	증감사유	
	주택실 조직개편, 임기제 채용 등에 따른 직원 대민활동비 증가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서 311~317p)

□ 총괄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1,123억 6백만원(3.6%) 감추경하였는데, 이 중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가 △924억 4천5백만원(5건)임.

- 세부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²⁴⁾ 예탁금 중 도정계정을 당초 4,163억원에서 3,201억(△962억원)으로 감액²⁵⁾하고, 재촉계정은 당초 2,273억원에서 2,311억(38억원)으로 증액하였음. 계정별 예비비도 세출예산 총액의 1%가 넘지 않도록 감액조정 하였음.

■ 재무활동 (5건)	추경요구액(국비포함)	
통합안정화기금 예탁(도정)	△962억	원
통합안정화기금 예탁(재촉)	38억	원
예비비(국민)	△18백만원	
예비비(도정)	△7백만원	
예비비(재촉)	△30백만원	

-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198억 5천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 중 주요한 감액사업은 일반(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정산금(△170억 7천6백만원)과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 중 금년도 미집행 예상금액(△78억원)을 조정한 것임. 주된 증액사업은,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조합 공공지원(35억1천9백만원)’과 ‘공공정비계획수립(33억6천9백만원)’임.

■ 감액 - 주택사업특별회계(6건)	추경요구액(국비포함)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70억	76백만원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78억	원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국고보조금	△12억	53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도정)_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5억	59백만원
공공주택건설	△9억	50백만원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1백만원	

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25)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액 규모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도정계정 감액 규모는 기존 예산 대비 23.1%인 962억원만을 감액하였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서울시 전체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나, 금번과 같이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예탁금을 적극적으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 증액 - 주택사업특별회계(5건)

추경요구액(국비포함)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35억	19백만원
공공정비계획 수립	33억	69백만원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7억	55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지원)	1억	44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도정)_‘23년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		2백만원

□ 세부사업별 검토

- “일반(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별설명서 1077p, 예산서 312p)은 정산비(△170억7천6백만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차년도에 재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항임.
- 정산비는 SH가 선부담으로 매입하고, 예산편성시기와 매입시기의 가격차액을 시가 정산을 통해 5:5로 분담하는 것으로, ‘12년~’18년까지 매입 완료된 부분에 대해 1차 정산분을 산정하여 3개년에 걸쳐 분납²⁶⁾하고 있음. 3개년 중 마지막 분납분에 대해 ‘25년 본예산 편성했으나, 순세계 잉여금 결손분 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을 차년도로 연기하는 것임.
-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수급자, 청년, 저소득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하는 주요한 사업으로 금번 연기된 정산비를 ‘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26) 매입임대주택 정산비 1차 정산분(‘12~’18년도분) 분납계획 및 실적 (단위:백만원)

계	‘22년	‘23년	‘24년
161,490	26,364	118,050 (집행잔액상계처리)	17,076

-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별설명서 1082p, 예산서 312p)는 연내 미집행 예상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25년도 본예산에 1,76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4년도 세출결산액(1,666억원)을 감안하여 경상적위탁사업비(수선유지비) 48억원, 자본적위탁사업비(임대보증금 반환금) 30억원, 총 △78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임.
- ‘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신규공급과 민간위탁분 이관에 따른 위탁 관리호수 증가, 호당 공가관리비 인상(75,000→79,859원),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법정적립금 편성, 퇴거 및 역상호전환(보증금회수, 월임대로 추가납부)세대 확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97억 8천 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이번 추경은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을 다시 감액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혹은, 금번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을 축소하는 일환일 것으로 염려되는 바, 임대주택의 안정적 관리와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위탁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국고보조금”(사업별설명서 1087p, 예산서 312p)은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사업과 관련하여 세출과목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당초 △12억 5천3백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²⁷⁾임.
- “국고보조금 반환(도정)_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예산서 313p)은 금액표기에 있어 예산과와 사업부서간 예산서 작성과정 중 발생한 단순

27) 세입예산도 같은 이유로 전액 감액 예정. 제2차간주처리 때에 ‘기금’으로 세입 및 세출 기편성하였으며 금액은 95억4천4백만원으로 상향.(세입 국고보조금 감액과 같은사항임)

오기로, 본예산에서 6억5천5백만원 편성한 것을 1억6백만원으로 감액(△5억9천9백만원)하는 사항임.

- “**공공주택건설**”(사업별설명서 1090p, 예산서 313p)은 ‘18년 말부터 추진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²⁸⁾에 따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과 지역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 중 ‘청석주차장(△4억6백만원)’과 ‘한누리주차장(△5억4천4백만원)’의 공정이 지연되어 국비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액하는 사항임.
- ‘청석주차장’과 ‘한누리주차장’ 공공주택건설사업은 ‘21년도에 착공 후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하였고, 관련 예산 또한 ’24년도 본예산 편성 후 추경 감액, ‘25년도 본예산 편성 후 금번 또다시 감액하는 것으로 사업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금번 감추경은 전액 국비로 보여지나, 각 사업지별 총 예산²⁹⁾은 국비 및 시비, 구비, SH 까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함.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³⁰⁾ 운영**”(사업별설명서 1100p, 예산서 313p)은 기숙사 화재보험 비용 1백4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임대주택과에서 서울시 소유 공공임대주택 손해보험 가입시 일괄로 가입토록 부서 간 협조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전액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1백40만원)한 것 임.

28)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18.12.19., 국토부-서울시 공동발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 (‘18.12.26., 서울시 발표)

〈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18.12.26.)〉

- | | |
|-------------------------|---------------------------|
| ① 주민편의시설 및 미래혁신시설 함께 공급 | ④ 직장인, 신혼, 중산층 함께 사는 공동주택 |
| ② 창조적방식 도시(공간) 재창조 | ⑤ 지역 랜드마크 등 디자인 혁신 및 다양화 |
| ③ 도심형 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 |

29) 청석주차장 143억(국14,시6,구56,SH67), 한누리주차장 105억(국18,시28,구19,SH40)

30)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지방자치단체(18개) 출신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시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기숙사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임.(SH 위탁관리중)

-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은(사업별설명서 1104p, 예산서 315p)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시 필요한 비용을 시와 구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 예산을 구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교부³¹⁾하는 사항임. 개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및 지원기준 완화됨에 따라 각각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35억1천9백만원 증액하였음.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과 관련해서, '24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고³²⁾ 금년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음.
- 조합직접설립 지원³³⁾과 관련해서, 조합 직접설립 지원을 위한 주민 동의 기준이 당초 토지등소유자 3/4였으나, 규제철폐115호에 따라 기준을 50%로 낮추어³⁴⁾ 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추진위구성 및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3,518,652,000원 = 3,518,652천원 추진위(8개소)+조합직접(27개소) 총 45개소
	증감사유
	○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규제철폐 115호, 75%→50%)에 따른 보조금 지원 희망 대상지 증가(10개소→18개소 +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구성 희망 대상지 증가(16개소→53개소 +37)

31) 시(소요비용의 70% 이내에서 재정력에 따라 자치구에 차등 지원), 구(나머지 비용은 자치구 예산 활용)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중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33) 조합 직접설립 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양식의 부재, 홍보부족, 시-구예산부족, 동의서징구의 어려움 등이 있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34)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방침 수립 준비중으로, 6월 내 수립 예정

- “**공공정비계획수립³⁵⁾**”(사업별설명서 1108p, 예산서 315p)은 ‘25년도 기 선정 물량이 이미 20개소로 본예산에 편성분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 되어, 향후 선정 예정물량 10개소 추가 반영하여 계획수립비용지원 33억 6천9백만원 증액되었음.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280,750,000원x12개소	= 3,369,000천원
	증감사유	
	2025년 주택공급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³⁶⁾37)**”(사업별설명서 1095p, 예산서 313p)은 사업지별 추진일정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각 사업지별 증/감을 합산하여 총 7억5천5백만원(국비2억7천5백만원) 증액하는 것임.

구분	내용	증감(백만원)
노동자복지관	‘25년도 2월 기착공하여 착공분 국비 증액	(×2,150) 2,150
신촌동 주민센터	금년 내 착공이 예상(11월)되어 착공분 국비 증액	(×222) 222
가리봉구시장	SH와 구로구 협의지연, 착공분 국비 감액	(×△2,097) △2,097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세입추경분(자치단체부담금)을 SH에 교부	(×-) 480

- “**국고보조금 반환_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서 314p)은 ’15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온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

35) 신속통합기획(법적명칭: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화도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36)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이나, 기존의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확대, 임대료체계 단순화 등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임. 국고보조금 교부 시스템 상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예산서 상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관리중임.(‘22년도 이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사업은 이 세부사업에 포함)

37) ‘25년도 본예산 중 해당 세부사업에 포함된 사업지는 SH위탁사업 3개소(장지차고지, 노동자복지관, 도봉소방학교)와 SH직접시행 8개소(신촌동주민센터, 가리봉구시장, 명일1동주민센터, 방화차고지, 금천경찰서, 면목행정타운, 중랑창업지원센터, 영등포공공주택지구)임.

사업³⁸⁾이 종료되어, '16년~'20년에 교부된 국비교부액 50억 중 집행잔액 6천3백만원 및 이자액 8천1백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임.

- “국고보조금 반환(도정)·'23년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³⁹⁾”은(예산서 315p)은 '23년도 교부된 3천2백여만원 중 3천1백여만원을 집행 완료하고 남은 반납원금 1백여만원과 이자 40만원을 반납하는 것임.

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서 314p)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4년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편성한 97억8천9백만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임.

4) 종합의견

-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131억 7천8백만원, 세출 △1,024억 9천9백만원 감액되어 각 세입과목 및 세부사업도 감액하는 사항이 대다수임.
-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수급자, 청년,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SH에 지급하기로 한 정산비를 삭감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년도 예산편성 후

38) 용산구 용산2가동 33만제곱미터일대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50억, 시비50억을 투입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신혼시장 활성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녹색골목길 조성, 마을배움터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23년도부터 국토부의 정산지침에 따라 지정된 회계법인을 통하여 보조금 정산을 진행하였고, '25년도 1월 국토부 확정통보받음.

39) '23년 재건축 초과이익 자본이전 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중 50%를 국가(주택도시기금)에 귀속한 뒤, 이를 다시 차년도에 지자체 평과결과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배분토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별도 제출한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에 의해 사용하고 결산명세를 국토부장관에게 다음연도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시는 해당 부담금을 '장기수선 제도개선 방안 수립 용역'에 집행한 것으로 파악됨.

조속히 집행해야할 것임.

-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는 연내 미집행 예상금액을 감액하는 것이나, 당초 본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을 다시 감액 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그 산출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기 교부하였던 SH 대행사업비를 위탁비반 환수입으로 금년 내 집행이 불급한 사항을 반납받는 것이나, 5개 사업지 중 3개 사업지는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수인 사항으로, 집행이 늦어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동체주택활성화사업과 사회주택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차지원 사업 과 관련하여, 시 집행액과 은행의 실지금액의 차액을 매년 정산하지 않고 약 장기간 은행의 별단계좌에 예치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 리를 소홀히 하였음. 향후 이차지원사업은 매년 정산하도록 하고, 은행과 약정을 통해 일정부분 이자를 회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할 것임.
- 세입과목 정정(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국고보조금), 금액 단순오기(노 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국고보조금 반납 지연('23년 재건축 초과이 익자본이전) 등 관리 미흡에 따른 추경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음. 예산집행 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 의가 필요함.
- 끝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결손됨에 따라 금년도 내 불급한 사항에 대하여 세입확대하고 세출감축을 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공백 발생 및 축 소 등우려되는 사항이 다수 확인되는 바, 향후 차질없도록 정책사업의 관

리가 필요함.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 관리에 있어 금번과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추계, 세출산출에 있어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갖고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홍예지	02-2180-8205

[붙임] 주택실 추정 사업 별 예산집행 현황('25.6.9.기준)(p.24)

붙임

주택실 추경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25.06.09.기준)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일반회계							
주택정책과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합계	388,458	155,225	155,225	233,233	4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258	36,547	36,547	57,711	38.8%
		사무관리비	11,000	8,600	8,600	2,400	78.2%
		국외업무여비	50,000	17,543	17,543	32,457	35.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	12,502	12,502	12,498	50.0%
		특정업무경비	148,200	80,032	80,032	68,197	54.0%
		공기관등경상위탁비	60,000	-	-	60,000	0.0%
주택사업특별회계							
임대주택과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합계	159,375,650	16,549,050	16,549,050	142,826,600	1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00	5,250	5,250	5,250	5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95,823,000	16,543,800	16,543,800	79,279,200	17.3%
		출자금	63,542,150	-	-	63,542,150	0.0%
임대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합계	177,397,096	63,881,164	63,881,164	113,515,932	36.0%
		공공운영비	833,406	374,602	374,602	458,804	44.9%
		공기관등경상위탁비	90,299,469	30,999,421	30,999,421	59,300,048	34.3%
		감리비	252,893	252,893	252,893	-	100.0%
		공기관등자본위탁비	86,011,328	32,254,248	32,254,248	53,757,080	37.5%
임대주택과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국고보조금 지원	합계	10,797,100	9,543,724	9,543,724	1,253,376	88.4%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0,797,100	9,543,724	9,543,724	1,253,376	88.4%
임대주택과	국고보조금 반환 (도정)	합계	40,472,566	-	-	40,472,566	0.0%
		국고보조금반환금	40,472,566	-	-	40,472,566	0.0%
공공주택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합계	4,800	3,400	3,400	1,400	70.8%
		공공운영비	1,400	-	-	1,400	0.0%
		공기관등경상위탁비	3,400	3,400	3,400	-	100.0%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합계	1,779,488	-	-	1,779,488	0.0%
		사무관리비	23,467	-	-	23,467	0.0%
		시설비	806,220	-	-	806,220	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949,801	-	-	949,801	0.0%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통합공공임대주택)	합계	46,471,900	5,658,375	5,658,375	40,813,525	12.2%
		공기관등자본위탁비	14,380,754	-	-	14,380,754	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2,091,146	5,658,375	5,658,375	26,432,771	17.6%
주거정비과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합계	1,983,291	1,616,678	1,616,678	366,613	81.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83,291	1,616,678	1,616,678	366,613	81.5%
주거정비과	공공정비계획수립	합계	5,619,325	2,224,998	2,224,998	3,394,327	39.6%
		사무관리비	4,325	1,811	1,811	2,514	41.9%
		자치단체자본보조	5,615,000	2,223,187	2,223,187	3,391,813	39.6%
주택정책과	예비비(국민)	합계	947,685	-	-	947,685	0.0%
		예비비	947,685	-	-	947,685	0.0%
주거정비과	예비비(도정)	합계	904,654	-	-	904,654	0.0%
		예비비	904,654	-	-	904,654	0.0%
주거정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합계	416,300,000	-	-	416,300,000	0.0%
		예탁금	416,300,000	-	-	416,300,000	0.0%
재정비축진과	예비비(재촉)	합계	919,951	-	-	919,951	0.0%
		예비비	919,951	-	-	919,951	0.0%
재정비축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재촉)	합계	227,300,000	-	-	227,300,000	0.0%
		예탁금	227,300,000	-	-	227,300,000	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공동주택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합계	7,400	-	-	7,400	0.0%
		예탁금	7,400	-	-	7,400	0.0%